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고단 3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춘 천 지 방 법 원 속 초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 12. 13:00경 속초시 C 원룸 4층 옥상에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전화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 길 건너편인 위 학교 4층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7. 12:4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알게 된 위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전화를 걸어 "나 바바리맨인데 내가 자위 하는거 봐줄 수 있냐, 스타킹을 할 수 있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는 등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43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H, I, J, K, E, L, M, E, N, O, P, Q,R, S,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현장출동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음란행위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R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X교회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 사보고(Y 앞 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를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 봉사

판사 황은규